

수원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가단506806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19나8642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가단506806 판결

전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이형섭

피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배은서

변론 종결 2019. 8. 14.

판결 선고 2019.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3.8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의 보전 등으로 사용된다.

원고와 피고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2017. 5. 29.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자금명: 운전자금(일반기업), 결정금액: 4억 원, 융자기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융자취급기한: 2017. 8. 28., 융자구분: 협조융자'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결정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협조융자는 일반은 행자금을 재원으로 융자지원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경기도가 이차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원고는 2017. 5. 29. A에 1억 원을 대여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여신거래약정서상 계정과목명은 '중소기업 자금대출', 자금용도는 '원자재 구입자금 및 운영자금', 여신만료일 '2020. 5. 28.', 여신이자율은 '변동금리 3월물 KORIBOR + 3.187%'이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의 상품유형은 '기타중소운전자금대출'이다.

한편, 이 사건 대출 당시 여신이자율은 4.537%,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이차지원율은 연 1%이다.

라. 피고는 2017. 5. 29.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기한 '2020. 5.28.', 보증방법 '개별보증', 보증금액 '8,500만 원', 피보증인 'A', 대출과목 '중소기업 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억 원', 보증비율 '85%'로 기재된 신용보증서(이하 위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서를 '이 사건 보증 및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보증서에는 '1. 본 보증은 경기도 운전자금(일반기업)에 대한 보증임', '2. 본보증서는 12개월
거치 24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취급하실 것(상환주기 3개월)'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를 제출받고 2017. 5. 31.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바. A은 2018. 1. 31.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기한의 이익 상실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이율은 연 4.817%이고,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1억 원이다.

사. 이 사건 보증에 관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2. "신용보증조건"은 신용보증서에서 명시한 채권자(원고), 피보증인, 보증금액, 보증채무최고액,
보증

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보증비율 및 보증특약을 의미합니다.

제5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1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제21조(보증특약의 운용)

1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원고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2조(면책)

1 피고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한 때

2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함

니다.

아. 이 사건 약관 제22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면책기준'이라 한다).

면책기준	
면책사항	면책범위
1.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하였을 때 가.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 위반 - 채권자 영업점, 채무자, 보증부 대출과목이 다른 경우	재단(피고)책임분담금액 전액 (종속채무도 면책)
다. 위 "시설자금보증 관련 보증특약"이외의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1) 보증특약에서 한정한 신용보증대상채무가 아닌 때	신용보증대상채무가 아닌 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종속채무
(2) 보증특약에서 제한한 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3) 위 "(1)" 및 "(2)" 이외의 경우로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재단(피고)이 손해를 입은 금액 및 종속채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금액: 이 사건 보증에 근거한 보증채무액 원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817%에서 경기도의 이자지원율인 연 1%를 뺀 나머지만을 구함.

3. 이 사건의 쟁점 - 보증채무 면책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일반대출로서 이 사건 보증서의 특약사항에 정한 조건(경기도 운전자금으로 대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대출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약관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이 사건 면책기준에 의하여 전액 면책된다.

나.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보증서상의 대출과목과 이 사건 대출과목은 '중소기업 자금대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 정한 전액 면책사유인 '보증부 대출과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이 사건 보증서 특약사항 제1조는 보증채무의 범위가 '이 사건 대출 원금 및 경기도가 보전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라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 청구는 그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면책기준 중 '보증특약에서 한정한 신용보증대상채무가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면책범위가 '신용보증대상채무가 아닌 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종속채무'이므로, 피고의 면책범위는 이 사건 대출금 중 경기도가 부담하는 이자일 뿐이어서, 이를 제외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없는 면책 항변이다.
- 3) 피고의 보증범위를 이 사건 대출원금 및 경기도가 보전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로 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의사 합치가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청구도 그에 부합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면책기준 중 '기타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면책범위는 재단이 손해를 입은 금액 및 종속채무인바,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금 및 경기도가 보전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어면책될 것이 없다.
- 4) 이 사건 협약에 의한 대출과 이 사건 대출은 일부 이자를 경기도가 보전하는지여부만 다를 뿐이어서, 이 사건 대출과 이 사건 보증대상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판단

이 사건 보증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대출은 경기도 운전자금 대출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원고는

일반대출을 함으로써 이러한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보증채무 전액을 면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보증서 특약사항 제1조, 이 사건 결정통보서의 문언을 보면 이 사건 보증의 대상이 협조융자 방식의 경기도 운전자금 대출(이 사건 협약에 따른 대출)임은 명확하고, 이 사건 보증서 특약사항 제1조에 관한 원고 주장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넘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과목명만 중소기업 자금대출로 기재했을 뿐 일반대출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에 관한 업무 지침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이하 '융자지침'이라 한다. 을 제3호증) 제32조에 의하면 융자취급은행은 협조융자의 업체별 융자및 상환내역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 이하 '지머니'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지머니에 이 사건 대출 실행과 관련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협조융자를 실행했다면 A으로부터 경기도의 이자지원분 연 1%를 제외한 나머지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대출금 원장(갑 제1호증의 2)를 보면 원고는 경기도의 이자지원분을 차감하지 않은 채 약정이율 전부를 징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융자지침에 정한 사항이나 협조융자의 성격에 반한 업무처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과 이 사건 협약에 의한 협조융자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보증특약은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채권자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이 사건 약관 제21조) 보증특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면책되고, 그 면책 범위는 피고의 책임분담금액 전액이 다(이 사건 약관 제22조, 이 사건 면책기준 제1호 가.목).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이 이 사건 보증서의 보증특약에 맞지 않는 대출임은 명백하고, 융자지원 결정과 실제 대출의 차이(이자 징구방식 등의 대출조건, 지머니를 통한 등록 및 사후 관리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